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급금 집행방안 안내

1. 관련 근거

- 가. 감염병정책과-1487(2026.8.21.)호
- 나. 감염병정책과-1706(2025.9.24.)호
- 다. 감염병정책과-1211(2025.7.1.)호
- 라. 위기관리총괄과-2282(2024.10.11.)호

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종료('24.5월)에도 불구하고, 정산 누락 및 지연 신청에 따른 미정산금 지급 요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미지급금 집행방안을 안내드립니다.

가. (청구기한) 공법상 소멸시효 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 인정

* 발생일(격리입원치료 종료일)로부터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나. (지급 자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자원 활용

다. (지급 기한) 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연내 신속 집행 추진하되,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지급(지급기한 미적용)

3. 각 지자체 및 협회는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 관할내 의료기관이 기간 내 격리입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정산금 지급 계획 1부. 끝.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염병관리과장),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과), 인천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경기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대구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대전광역시(질병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공공의료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위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공공보건의료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의료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식품감염병안전과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주무관

손혜연

행정사무관

윤다솔

감염병정책과 전결 2026. 8. 25.

장

이선규

협조자

시행 감염병정책과-1519

(2026. 8. 2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
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7138

팩스번호 043-719-9459

/ shy7742@korea.kr

/ 비공개(5)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